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 제고
-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회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등

4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지정 (안 제7조)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규정 개정 (안 제13조, 제13조의2 신설)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을 제고,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하나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,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,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